

	<h2>교원 명예퇴직 규정</h2>	문서번호	3-2-22		
		제정일	2013. 01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1/4	관리 부서	교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의담학회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 정관 제50조(명예퇴직수당)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원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신청자격)** 이 규정에 적용되는 교원은 명예퇴직일 기준 만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중에서 본인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
**제4조(신청의 제한)** ①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1.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,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.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.
3. 타 교육기관의 신규 임용 또는 기관장으로 임용되는 자.
4.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명예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.

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수급계획, 예산운영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5조(명예퇴직 신청)**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명예퇴직일 90일 전까지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심사결정)** ① 학교의 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.

1. 장기 근속자
2. 상위 직급자
3. 신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자

**제7조(대상자 결정통지)** 학교의 장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명예퇴직 사직원 제출)**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 대상자는 그

	<h2>교원 명예퇴직 규정</h2>	문서번호	3-2-22		
		제정일	2013. 01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4	관리 부서	교무처

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예퇴직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명예퇴직 예정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**제9조(명예퇴직일)** 명예퇴직일은 매 학기말로 한다.

**제10조(명예퇴직수당)**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별표1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산정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

**제11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<h3>교원 명예퇴직 규정</h3>	문서번호	3-2-22		
		제정일	2013. 01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3/4	관리 부서	교무처

[별표 1]

###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

정년 잔여 기간별 구분	산정 기준
1. 1년 이상 5년 이하	- 퇴직 당시 월 보수액의 50% × 정년 잔여 월수
2. 5년 초과 10년 미만	- 퇴직 당시 월 보수액의 50% × [ 60개월 + $\frac{\text{정년 잔여개월 수} - 60\text{개월}}{2}$ ]
3. 10년 초과인자	-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(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

※ 비고

- 위 산정표에서 월 보수액이라 함은 기본급에 제수당(근속수당, 장기근속수당, 정근수당, 가족수당, 연구보조비, 직급보조비, 기타수당, 보전수당 등)을 포함한 연지급 합산액의 1/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설날 및 추석 상여금, 불특정 지급액은 제외한다.
-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은 수급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